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8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광성, 최웅식, 김기덕, 김광수,
노승재, 김정환, 김제리, 유정희,
송정빈, 장상기, 오현정, 최정순
의원(12명)

1. 제안이유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다양한 에너지 사업 환경 변화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에너지 분야 사업추진 시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열거된 조문을 새로운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안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맞춰 용어를 변경함(안 제20조제1항제10호)
- 나. 태양광, 수소 등 에너지 간 융·복합 등의 신사업 분야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공사에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정 사업 항목을 신설함(안 제20조제1항제1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2) 「전기사업법」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
7.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교육홍보, 연구 개발, 국내외 협력,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 한다.)
10.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제2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 5. (생 략)</p> <p>6. <u>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u></p> <p>7. <u>제1호부터 제6호 관련 조사, 연구, 개발,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u></p> <p>8. <u>제1호부터 제7호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u></p> <p>9. <u>제1호부터 제8호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u></p> <p>10. <u>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u></p> <p>11. (생 략)</p> <p><신 설></p>	<p>제20조(사업) ①</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u></p> <p>7. <u>「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u></p> <p>8. <u>「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사업</u></p> <p>9. <u>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교육홍보, 연구개발, 국내외 협력, 부동산 거래 등의 사업을 포함 한다.)</u></p> <p>10. <u>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u></p> <p>11. (현행과 같음)</p> <p>1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p>